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항의 신설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강릉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lys2941a@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